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주요 개정내용(‘20.3.6 국회 본회의 통과)

I. 개정이유

-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지원과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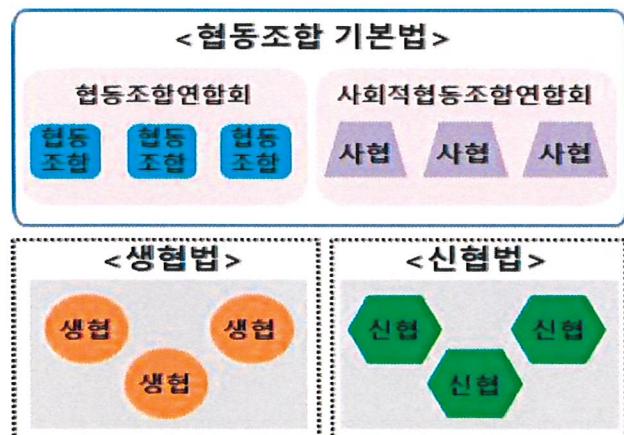
II. 추진경과

-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(‘17~’19) 등에 반영된 개정소요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개정안(정부안) 마련 · 국회 제출(‘18.2.9)
- 기재위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(황주홍 의원안 등)을 통합하여 대안 의결(‘19.11.29) →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(‘20.3.4) → 본회의 통과(3.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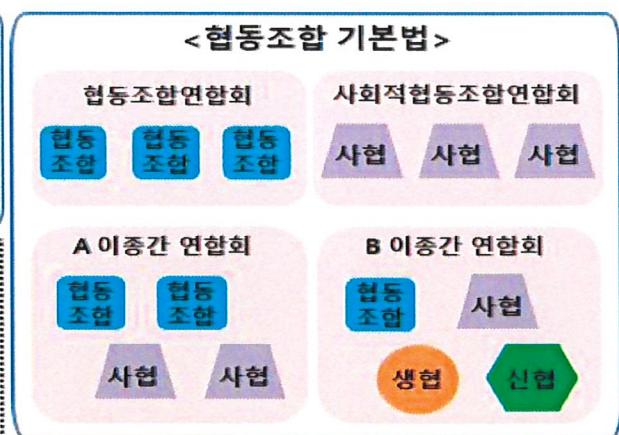
III. 주요내용

-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(생협 · 신협)이 참여하는 이종(異種)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 · 협력 촉진
 - 이종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 마련 예정

< 현 행 >



< 개 선 >



- ② 임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 · 의결권이 없는 우선 출자 제도를 도입,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
 -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의 30% 이내로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만 우선출자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예정

- ③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「민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,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
- 현행 '금치산선고'를 대신하여 '성년후견개시의 심판'을 받은 경우로 정비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, 집행유예기간이 만료 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되도록 정비
- *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실형보다 기간이 길어 집행유예 만료 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, 실형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 발생
- ⑤ 협동조합 신고수리·설립인가 등^{*}에 간주제^{**}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
- * 협동조합 설립·변경 신고, 협동조합연합회·변경 신고 등 7개 신고사무
사회적협동조합 설립·정관변경 인가,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등 11개 인가사무
 - ** 처리기간 내 신고수리(인가)여부 또는 지연사유 未통지 경우, 기한종료 다음날 신고 수리(인가)로 간주
- ⑥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(시정명령 등)하고,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*
- * 법원행정처가 최후등기 후 5년 경과 조합 대상으로 영업폐지 여부 확인 후, 2개월내 미신고시 해산간주
- ⑦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·추행의 죄를 범한 자(300만원 이상의 벌금형)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

IV. 시행일: 공포일(3월중)부터 6개월후

- * 우선출자 대상·세부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('20.상반기中 개정)
- 다만, 조합원 당연탈퇴사유(③)와 임원 결격사유 관련(④)은 공포일부터 적용, 신고수리 간주제(⑤)는 공포 1개월 후 신고분부터 적용